

의안번호	2221094
의 퇴 인	정혜경의원
회 답 일	2026.10.7.
추 계 번호	26B4591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7조 (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)	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. 1의2. 재사용제품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·지원 및 기반 구축 사업 3의2. 다회용기 등 재사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	의무규정
2	안 제38조 (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)	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교부받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37조제1호의2 및 제3호의2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.(제4항)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37조 (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8조 (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)	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교부받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상하여 다회용기 등 재사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임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, 다회용기 등 재사용 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「자원순환촉진지원」 사업을 통해 제주도 전역의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반납편의를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, 해당 사업의 2026년 예산은 10억원임
 -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기준 제주도를 대상으로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100대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, 무인회수기 1대당 지원금은 2,000만원으로 국비 보조율은 50%임

□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지방자치단체의 다회용기 등 재사용 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 사업의 확대 규모 및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향후 사업 확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

(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)

□ 사업개요

- (사업내용)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('22.12)에 따른 소비자의 반환 편의성 증진 및 대상사업장의 반납처리 부담 완화
 - ※ 법적근거 :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26조(재정적·기술적 지원 등) 및 「자원재활용법」 제31조(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)
- (사업기간) '23년, '26~'28년
- (사업형태) 지자체 자본보조(국고보조율 50%)
 - ※ 「자원재활용법」 제15의6에 따라 설립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위탁
- (시행주체) 환경부, 기초 지자체,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
- (지원근거)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26조, 「자원재활용법」 제31조

□ 필요성

- (반환 편의성 증진) 사용된 일회용 컵을 비대면 방식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반환할 수 있고, 반환 컵 개수의 제한이 없어 소비자 반환 편의성 제고 및 컵 회수율 증대에 기여
 - (매장 업무 경감) 매장에게 부여된 일회용 컵의 회수, 보관 및 보증금 반환 등의 업무를 자동화 장치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제도 시행에 따른 매장의 추가적인 운영비용 절감
 - (반환경로 확대) 지하철역, 유원지, 주택가 등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여 소비자의 컵 반환 장소 확대
 -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방식으로 음료 구매 시 일회용 컵을 사용하게 되므로 매장 이외의 반환 장소 확보가 회수율 제고에 중요
- ※ '23년 무인회수기 설치(225백만원) : 15대(세종시 8대, 제주도 7대)